

市場のグローバル化と法學の役割

- 消費者の人權確保の視點を中心に -

宮坂富之助*

目次

1. はじめに
2. 市場のグローバル化と國家主權そして人權について
3. 急速な「市場の自由化」に對する批判的な論議について
4. 「文化經濟學」の主張から學ぶこと
5. 「アジア的價值」論をめぐって
6. 現代の自由、人權論の展開のなかで、個人主義と共同體主義を考える
7. 經濟のグローバル化と競争法・競争政策の機能について
8. 競争法・競争政策の課題について
9. グローバル化する市場で消費者運動、市民運動の必要性和期待

* 早稻田大學 法學部 教授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법제연구 / 제19호

市場의 글로벌화와 法學의 役割

- 消費者人權確保의 觀點을 中心으로 -

譯: 俞 珍 式*

차 례

1. 처음에
2. 市場의 글로벌화와 國家主權 및 人權
3. 급속한 「市場의 自由化」에 대한 批判的 論議
4. 「文化經濟學」의 主張에서 배우는 것
5. 「아시아적」 價値論을 둘러싸고
6. 現代의 自由·人權論에서의 個人主義와 共同體主義
7. 經濟의 글로벌화와 競爭法·競爭政策의 機能
8. 競爭法·競爭政策의 課題
9. 글로벌화하는 市場에서의 消費者運動·市民運動의 必要性和 期待

* 慶熙大 法大 教授, 法學博士

1. 처음에 - 보고의 기초에 있는 문제의식에 관해서 -

필자는 지금까지 경제법연구에 종사해 왔지만, 다른 법률학의 영역 혹은 경제입법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는 여러 과학에 관해서 상세한 연구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세기말의 십수년, 모든 과학이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법률학의 모든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의 지배」의 실현 그리고 법적 정의의 실효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다.

1-1. 금년 7월에 개최된 일본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의 총회에서는 현대일본에 있어서 모든 과학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에 관하여 회장은 「현대일본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인 모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과의 사이에 언밸런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기본과제를 풀어 가는 것이 현대의 과학자 전체의 책무이다」라는 취지로 총괄하였는데, 어느 때보다도 과학간의 부감(俯瞰)적인 협동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현대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화」와 그에 따른 공공정책상의 과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국가의 공공정책의 과제에 대한 종래의 과학의 방법과 사고의 틀의 존재양식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일본학술회의에 설치되어 있는 「태평양학술연구연락위원회·지역학연구전문위원회」는 이 총회에 「지역학의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을 제출했다. 이 제언에서는 「지역학」을 「현지연구에 뿌리를 두고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통합적, 부감적(俯瞰的)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지역환경·생태계의 파괴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세계적인 차원의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가능성·세대계승성이 보장되는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등 인류적 과제를 절실히 자각하여, 물, 식료, 건강, 인구, 에너지, 라이프스타일, 경제시스템, 가치관, 교육, 정보질서, 참가와 파트너십, 민주주의, 그 밖의 모든 문제에는 지식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들 과제를 지역학으로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제언은 전통적인 과학연구의 방법에서 구미의 이론연구와는 별도로 아시아의 연구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협력 연대하여 아시아지역연구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보교환시스템의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1-2. 이상은 최근의 일본학술회의의 주된 사조를 인용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의 방향이, 현대일본의 모든 법률학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거품경제의 붕괴」이후, 이 몇 년 사이에 많은 법률학의 영역에서는 「법의 변용」이라는 상황인식을 나타내는 개념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 졌다. 거기서는, 통치구조, 경제운영, 그리고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각종 법제도에서 현실과의 괴리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매우 대략적인 이야기이지만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1970년대초 고도성장정책의 여파로 인한 주름살을 바로 잡아 사회복지국가에로의 제도정비를 기대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공공정책의 방향은 「구미(歐美)발(發)」의 「작은 정부」론, 정부규제의 완화정책, 시장원리를 우선시키는 경제운영 등, 일련의 제도개혁에 의해서 재편성을 강요당하였다.

이들 제도의 재편성의 요인에는 국내외적인 것이 있고, 다양한 것으로 복잡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 주로 내재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대화한 재정적자와 행정집행체제를 재편성하는 행정·재정개혁, 국제적인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공기업·민간산업의 재편성에 대응하는 「민영화」·「규제완화」정책, 사회구조에서는 고령화사회의 출현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 등이 있다. 개개기업의 내부합리화를 포함하여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관해서 말하면, 특히 「거품경제의 붕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규제완화정책과 동시 복합적으로 진행된 금융사업의 재편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진전은 중요한 변화이다.

국제적인 외재(外在)요인과의 복합요인으로 보면 급속하게 진행된 「시장의 글로벌화」이다. 또한 전자산업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같은 시장의 국제영역을 넘어선 지역적인 확대를 수단의 면에서 추진한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로 형성되고 있는 기업행동의 전형적인 예는 기업간의 자본거래를 비롯한 각종 제휴관계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이다.

1-3. 그런데 이상과 같은 현상인식에 의하면 현대의 법률학은 극히 다양한 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속에서 다시금 현대적인 「법의 지배」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에 바탕하여 법제도의 존재양식을 추구해야만 한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법률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법률학의 극히 일부분인 경제법학의 연구자에 지나지 않으며, 또 경제법의 영역만에 한정해 보아도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다. 이즈음 해서 이하에서는 시점을 한정하여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화」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국가의 정치적인 영역을 초월한 현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주권기능 - 통치기능을 더 이상 쓸모 없게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로 경제운영 특히 정책책정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장행동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이 국제적인 금융정책에의 균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파급적으로 국내의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도 규정한다고 하는 연관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로 경제정책과 인권과 관련하여, 정책의 기초에 「아시아적 가치관」이 있는 것이 강조되고, 독자적인 정책의 정통성이 강조된다.

필자는 이 「아시아적 가치관」 그 자체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시장의 「글로벌화」현상에는 주로 미국의 기업운영에서 채용되고 있는 기준에의 조화 내지 채용이 요구되는 경향(「글로벌·스탠다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의 많은 제도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법률학에서는 이러한 법제도면에서의 경향을 「법의 글로벌화」라고 파악하여 주로 인권확보의 시점에서 현대법의 특질로 위치를 부여하는 인식이 강하다. 이 점을 중시하고 싶다.

둘째로는 경제법학에 있어서 시장의 글로벌화를 직접 표현하는 국내외의 기업 내지 산업의 재편성이나 결합관계의 동태(動態)에 주목하여, 그것이 국내외의 시장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경쟁법제도상에서 어떠한 과제가 필요한가가 문제이다. 여기서는 특히 정보통신관련산업의 발전(「산업의 정보화」, 「IT 혁명」) 혹은 「뉴 이코노미」 등의 배경에 있으며, 일본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통합재편성, NTT 등의 정보관련통신산업의 재편성, 국제적으로는 다국적과

점기업간의 결합·제휴 등,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추진하는 기업행동이 있다. 또한 WTO의 차기무역교섭에서는 국제투자·서비스무역의 방식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배경 속에서 특히 「정보화」, 정보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글로벌하게 소비자개인의 시장에서의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래 기업간의 경쟁관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는데 이러한 인식은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개인의 이익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넓게 생활자이자 근로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각종의 사회운동조직의 현재의 상황과 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저의 첫번째, 두번째의 문제의식과 깊이 내적으로 관련된 문제의식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심포지움의 종합주제인 「법의 지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다. 이 관점에서는 시장의 확대에 따라 특히 정보산업에 의한 정보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해서,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하고 생활의 경제적 편의성이 우선시 되어 생활면의 가치로서 개인에게 강하게 의식되어 촉진되는 경향을 낳는다. 이와 같은 커다란 사회의 흐름은 거역하기 힘든 일반화현상으로 나타난다. 「법의 지배」원칙은 먼저 무엇보다도 국가의 통치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이다. 법률학이 항상 기본으로 삼아 온 이 원칙을 정치적인 통치의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개인·기업행동에 관해서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저는 현대 그리고 다음 세기의 국제사회의 발전을 담당할 젊은이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다. 이 보고는 보고내용전체의 기초에 있는 필자의 바램이다.

2. 市場의 글로벌화와 國家主權 및 人權

2-1. 인권보장의 제도책임이 먼저 국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직접투자의 자유 혹은 무역의 자유화요구가 한 나라의 정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또는 자국의 노동환경 혹은 자연환경·자원보전에 문제를 불러일으켜, 그것이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혹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의 정책대응이 국가주권의 주도하에서 행사되고, 관계국의 관계산업과 그 이익조직이 자국의 정부를 통해서 대항하여, 결과적으로 주권국가간의 국제문제화 하는 구도가 생성된다. 현대의 주요한 세계지역의 경제구조가 「국경 없는 경제」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하여도, 시장의 자유화가 초래하는 문제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주권의 「희박화」도 없으며 또한 하물며 「주권의 상실」은 없다. 오히려 예를 들면, 환경보전의 정책과제처럼 「주권기능의 강화」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의 지배」의 존재양식에서 보면 말 그대로 본래 실효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의 「지배」의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 이상, 「법」의 내용 그 자체도 국제적인 대항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2-2. 그래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확립과 형성과정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론간의 대립·상극의 현상을 나타내는 주요한 논조(論調)를 들어 논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론상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 논점은 각각 다양한 쪽을 가지고 전개된다. 또 그 전개와 시점도 다르다. 따라서, 각 논조의 문제의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그 주요한 논의 중에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의 시점에 중점을 두고 논하고자 한다.

2-3. 자유화정책의 적극적 추진론 - OECD보고서에서 -

시장의 개방 -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국제적인 비판을 의식한, 어느 쪽이나 하면, WTO의 국제적인 룰-의 정통성을 계몽적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개별 룰-의 공정성을 표명하고 강조하는 OECD문서가 있다(OECD, Open Markets Matter -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1998). 이것은 OECD각료회의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로, 그 속에는 무역·투자·환경보전문제와 자유화의 관계를 논한 부분(제6장), 그리고 특히 「시장개방과 국가주권」을 논한 부분(제7장)이 흥미롭다.

먼저 전자에서는 시장의 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환경규제는 풍요로운 국가일수록 엄격하다는 것, 자유화는 환경보전의 기술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것, 시장폐쇄적인 국가일수록 환경오염의 확대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환경오염의 저지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들은 다소 총론적인 논리전개를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더 나아가 자유화와 환경문제에의 실제적

인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발전시키는 정책은 환경의 악화를 시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경을 넘는 문제에는 대화·협력이 필요하며 「무역·투자의 자유화는 불충분한 환경정책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맺고 있다. 요컨대, 경제효율을 높이는 것과 환경의 보전·개선에 필요한 코스트, 기술개발면의 이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또, 후자에 관해서 보면, 국가에 있어서 자유화는 「국민의 복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경제개혁전략의 일환이자… 수단이며, 이로 인하여 개선된 국제경쟁력이 국민소득을 향상시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국내경제·사회정책의 책정을 행할 수 있는 여유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권에 관한 많은 가치는 명백히 상호의존적이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상황에서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곤란한 것은 자유화의 전략과 결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에 널리 혜택을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시장자유화는 국내의 규제조치의 전면적인 해제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제품의 질과 안전보증시스템, 환경의 질과 보호, 은행·금융에 대한 신중한 감독 등, 많은 분야에서의 공적인 기준 혹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국내규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문제영역에서 이 보고서의 중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최근 경험한 금융시장의 혼란만 하여도 어느 의미에서는 자유화를 보충(補足)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건전한 규제의 틀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장기능의 효율과 투명성, 그리고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고, 각 나라의 경제·사회정책과 규제의 틀에 다양성이 있으며, 따라서 「다국간의 무역, 투자협정은 그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도 각국의 정책이나 규제의 목표에 의심할 필요는 없다. 또 그 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 모두를 처음부터 세계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주권국가가 안고 있는 고유한 규제목표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국간주의의 본질은 공동행동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3. 급속한 「市場의 自由化」에 대한 批判的 論議

3-1. 앞에서 살펴본 복잡한 인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은 일본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이 몇 년 사이 특히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높아가고 있는 WTO체제에 대한 비판, 특히 그 구체적인 룰-의 설정이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주권국가 그리고 내부시민에 의한 강한 비판을 의식하여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자유화정책의 국가주권에 관한 논점을 둘러싼 「변명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WTO체제의 추진에는 역시 국가주권의 기능의 존중의 시점에서, 혹은 지역시민에 의한 다양한 관점에서 매섭게 비판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단지 시장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적극적인 효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에 관한 「부(負)의 측면」이 부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입장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심포지움에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2. 그것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다. 전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논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L. Wallah & M. Sforza, Whose Trade Organization - Corporate Globalization The Erosion of Democracy - (Public Citizen 1999)가 있다.

이 저작은 WTO체제 속에서 전개되는 기업행동, 특히 다국적기업의 행동, 혹은 국내산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여 비판적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환경, 식품의 안전기준, 유전자조작작물, 지적소유권, 노동조건, 그리고 「개발도상국」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운동조직으로서의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저작을 숙독하지 않았지만, Ralph Nader에 의한 동서(同書)의 서언에서 논지를 찾고 싶다.

그의 WTO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의 기초로서, 「이 새로운 체제는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적 복지의 실현에 바탕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거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의 향상에 두고 있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화는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형성되고, 글로벌·룰-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 요구에 따라 형성되었다...」, WTO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그의 오랜 기간에 걸친

다국적거대기업에 대한 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주요한 논지를 필자 나름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거대기업에 있어서는 지구는 공통시장이며, 자본의 원천이다. 그에게는 정부, 법제도, 민주주의는 그러한 수탈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지구 규모로 그와 같은 시장장벽을 삭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밖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법제도, 시민의 건강유지, 토지 그 밖의 자원을 지속적인 발전에 이용하는 제도 등은 그러한 기업행동을 억제하는 데에 유효한 보호조치인 것이다. 다국적기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민주성의 다양성이나 확산하는 의사결정이야말로 장벽인 것이다.

(2) 세계은행의 「환송강연」에서 H. Daly가 말한 것처럼(January, 1994), 전세계적인 글로벌리즘은 여러 나라의 국력이나 지역사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경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산업을 규제하는 국가의 힘을 삭감하는 것은,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사회의 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3) WTO 아래에서는 이른바 기업간의 「바닥에 떨어뜨리기 경주」(a race to the bottom)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생활수준, 환경·건강기준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산업사회의 형성에서 얻은 가장 명확한 교훈의 하나는 사업의 집중이 환경과 민주주의에 불건전하다는 점이다.

(4) 국제무역의 유용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공동사회에 터잡은 생산활동(community-oriented production)의 촉진에 사회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소규모의 사업활동일지라도, 그것이 지역의 욕구와 환경에 대하여 유연하고 적합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국의 요구에 한 나라 혹은 지역의 의사결정이 종속하는 것이 생활수준이나 모든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의의 기준을 세계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 「文化經濟學」의 主張에서 배우는 것

필자가 앞서 소개한 R.Nader의 모든 주장에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현대의 거대기업이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뒤틀림, 특히 인간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모순,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데, 환경을 비롯하여 국가나 지역의 독자적인 정책의사의 내용에도 미친다고 하는 우려의 표명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한 우려는 현대의 인권문제를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을 제공해 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경제의 글로벌화가 주로 경제학상의 시장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사상이나 이론에 반성을 촉구하는 이론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이것은 경제학의 영역에서 현대 인권론사상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이다.

「문화경제학」이란 무엇을 해명하려고 하는 경제학인가? 경제학자가 아닌 필자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심포지움의 과제를 고려해 볼 때 경제법학에 있어서 매력적인 연구동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제학이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Amartya Sen이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종래의 경제학에서의 효용에 의한 어프로치는 두 개의 대립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에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태도만을 고려하고, 물적인 생활조건을 보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적인 효용에의 욕구를 문제로 삼지 않고 있는데, 즉 인간이 자기자신을 평가하는 경우에 고려하게 되는 것,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피하고 있다. 인간은 타인의 인생과의 대비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해명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 내지 반성에서 출발하는 자세이다(센 저·스즈무라 역, 「복지의 경제학-재(財)와 잠재능력」, 이와나미서점, 1988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구매행동을 평가하는 경우, 단지 구매·소비에 의하여 재(財)의 효용이 실현되고, 인간의 욕구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태도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행동을 추상화하여, 현실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론의 협소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이야기하면, 종래의 경제학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행동의 동기, 그 경제적인 조건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진공업국과 발전도상국의 소비자를 전적으로 같이 취급하여 생활면에서의 욕구를 시장을 통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닌가? 각각의 서로 다른 경제적인 조건·환경 속에서 동일한 재(財)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또, 그 욕구의 표시의 가능성이나 방법조차도 다른 것은 아닌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 그 구축의 방법 등, 생활의 질·환경문제에의 사고방식 등이 이것을 나타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권 혹은 소시얼·미니멈에의 사회적인 합의의 형성, 이를 위한 법제도의 책정, 우선적인 국가재정면에서의 정책적인 배분 등이 과제가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필자는 인권보장의 시점에서, 글로벌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이에 추종이라도 하듯이 일국의 주도권 혹은 그것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재(財)·서·비스의 균일적인 표준화를 제도적으로 설정하고,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것은 신중한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개최된 밀레니엄·서미트에서는 거의 전원의 발언이 인권의 시점에서 이와 같은 기초를 띠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지 않은가?

5. 「아시아적」 價値論을 둘러싸고

인권과 시장의 글로벌화의 동향,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의 금융자본의 투자행동 혹은 산업자본의 급속한 진출행동과 관련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어느 쪽이나 하면, 정치적인 합의를 담아서 역사적인 문화전통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상징적인「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가 강조되고 있다. 거기서는 경제발전정책에 고유한 목표 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책의 기초가 다르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고 이해된다. 이 이론의 대립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논점이다.

필자는 그것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논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평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Amartia Sen의 논고 Human Right and Asian Value(in T. R. Machan(edited), Business Ethics in the Global Market(Stanford Univ. Press, 1999)가 있다. 이 논고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타자에의 관용 등과 같은 인권사상에 관련된 사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또 구미제국에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대에는 「구미문명」, 「아시아적 가치」, 「아프리카적 가치」 등, 특정한 가치론만이 지나치게 보편화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분석을 충분히 행하지 않고 특정한 가치론에서 그러한 주장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나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기초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현대의 법의 지배, 자유를 비롯하여, 민주주의가 지니는 법학상의 고찰의 전제로서, 이러한 과학적인 기본자세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6. 現代의 自由·人權論에서의 個人主義와 共同體主義

상기의 쉐의 일련의 논의를 비롯하여,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공통적인 사항은 「규제완화」정책비판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기업의 경제적인 자유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용인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한 현대적인 자유론, 인권론은 헌법학에서는 당연한 일로서 또 다른 법 영역에서도 앞으로 강화되고 연마되어 갈 것이다. 필자는 법철학의 영역에서, 그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논고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마이·모리기와·이노우에편 「변용하는 아시아의 법과 철학」(有斐閣, 1999)이다. 그 중에서도 이노우에 다쓰오의 「리버럴·데모크라시와 아시아적 오리엔탈리즘」이 흥미롭다.

필자 나름의 이해에 따르면, 이노우에는 아시아적 가치론에 있어서, 종교적 문명에 근거한 2항대립적인 분할은 잘못이며, 오히려 다양성을 뛰어 넘어서 서로 차이의 위에서 공생하는 것 - 자유론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자유·정교분리·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리버럴·데모크라시를 강조한다. 이 기조는 쉐의 그것과 같다. 「2항대립」의 인식도식은 「개인주의적인 구미사회」와 「공동체주의적인 아시아사회」라고 하는 인식면에서의 대립이 엇보인다. 이노우에는 이러한 대립도식에도 또한 회의적이다.

필자가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계에 관한 고찰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다양하게 계층적으로 참가하여 형성하는 공동체이다. 가족, 이웃, 친구, 직장, 직능집단, 지역적인 시민자치조직, 소비자단체, 그리고 민족공동체……. 이들 공동영역에서 공동의 영역에의 동화(同化) 혹은 공동책임에의 개인의 의식은, 개인의 존엄, 자유, 공동의사결정에의 참가 등의 권리를 용인함으로써 도야된다.

이노우에는 「개인권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공동성을 향수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지적을 한다. 요약하면 개인권의 존중에 근거한 의사결정에의 민주주의적인 참가는 개인의 자율성을 복돋우고, 공동체에의 연대의식을 자각시킨다.

또 그는 민주주의와 리버럴한 개인권의 수용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접합한다」고 한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필자는 개인의 자유에는 우선 먼저 당해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당해 개인이 바로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 주장은 타자의 자유의 용인을 당연한 것으로서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자율성이 자각된다. 이렇게 자율의식이 강화된 개인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가 속한 생활영역에서 타자를 포함한 공동체에의 연대의식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그 연대력은 개인의 공동체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참가시스템에 의하여 강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가 공동체주의를 내세워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을 종속을 위로부터만 강제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경험한 것처럼,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시켜, 진정한 공동체주의를 형해화 함으로써 마침내 개인을 방종의 세계로 내몰지도 모른다.

7. 經濟의 글로벌화와 競爭法·競爭政策의 機能

7-1. 공공정책으로서의 경쟁법·경쟁정책은 우선 먼저 국내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제도는 기업에 대하여 시장원리에의 강제를 필요로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행동의 요청이다. 자유·공정원리가 경쟁법과 정책의 규제원칙인 것이다.

필자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없었던 산업구조의 변동의 전개, 기업간의 새로운 결합관계 등을 배경으로 일본경제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모두(冒頭)에서 문제의식의 하나로 들었던 것처럼, 글로벌화하는 시장의 국제적인 확대의 동향 속에서의 정책대응으로서 국내의 여러 개혁, 제도개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일원으로서 공생·공존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정책원리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함한 경제적인 시장개방이 WTO의 새로운 교섭사항에의 대응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면에서의 조건정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일본경제의 운영과 개혁의 과제를 생각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EU, 그리고 미국의 경제전략을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일찍이 1970년대초부터인가 시작하여 마침내 몇 년전에 정점에 이른감이 드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자유무역의 의의」를 논한 몇몇의 의론(議論), 예를 들면 경제발전론에 관한 국제정치·경제학자로부터의 코밋먼트(commitment)의 논의가 있었다. 거기서는 「자유무역」을 지도원리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선진국 혹은 그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유무역의 존재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논하는 것은 적었다는 점이다.

7-2. 먼저 처음으로 이상의 산업의 경제적인 전략을 나타내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와 일본경제의 존재양식」, 혹은 「산업·시장행동의 글로벌화」를 강하게 의식하여 일본의 경제계의 관계자에 의한 현상인식과 전망의 일단을 나타내 주는 발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본관세협회상무이사회에서 미쓰비시소우켄의 부사장인 단노고우이치 「글로벌화에의 대응-아시아와의 공생-」이라는 제목의 강연이다(「관세와 무역」 2000년 8월호).

이 강연에서는 특히 일본경제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와의 의존관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미쓰비시소우켄의 산업관련분석에 근거한 동아시아와·미국·구주·일본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시산(試算)결과의 소개이다.

미국·구주·일본에 각각 예를 들어 100억달러의 수요의 증가가 있다고 했을 경우 동아시아지역에의 생산유발의 효과는 미국 6.57억달러, 구주 3.15억달러, 일본 3.97억달러로 추계되며, 이들 세 지역이 호황을 유지하여도 그렇게 차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경기회복에 의하여 100억달러의 수요의 증가를 가정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미국 6.58억달러, 구주 2.83억달러인데 대하여, 일본은 12.73억달러인데 이러한 추계수치에서 보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의 지원이 성공하면 일본경제에는 미국·구주의 2내지 3배규모의 프러스·리퍼쿠션을 기대할 수 있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지원하여 공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공헌한다. 그리고 규모가 확대된 시장에서 일본도 이익을 향수한다. 이러한 형태의 호순환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때

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계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동(同)씨의 강연취지에 관하여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감히 부언하면, 동씨는 일본기업의 글로벌화에의 대응에 관하여, 「내부의 글로벌리제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과제의 하나로 「이(異)문화에의 이해의 노력」도 들고 있다).

7-3. 산업·시장구조의 주요한 변화-과점화, 「융업화」를 가속화하는 기업 간 결합

첫째로 일본국내에 관해서 보자면, 원래 과점화의 시장구조는 1970년대초부터 의식적으로 경쟁정책상의 대응과제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산업의 과점화구조에 더해서 현재 새로운 동향은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불량채권」의 현재(顯在)화, 금융사업의 다각화와 표리관계에 있는 규제완화, 은행회계기준의 국제적인 표준화 등, 일련의 복합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금융사업의 재편성」이고 그 결과로서 주요한 은행을 통합하는 네 개의 파이낸셜 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로 정보산업의 발전 - 이른바 「IT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전자정보관련산업부문에서의 시장주체의 비약적인 증가, 그에 연동하는 형식으로 전개하는 기존산업에 있어서 재편성이다. 특히 기존산업이 정보기술 네트워크화에 의해서 생산구조나 유통과정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나 동향의 특징은 산업구조 혹은 시장구조의 면에서 말하면 이(異)업종간의 「융업화」 혹은 신규사업에의 다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전기와 같이 주로 정보화가 요인이지만, 규제완화에 의한 증권·금융사업의 재편성, 혹은 업적부진에 의하여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건을 도모하는 기업에의 신규투자 등, 구체적인 현상으로서도 매우 다양하다.

셋째로 산업구조의 면에서 「서비스산업」화의 경향이 현저하다는 점이다. 이 영역에서도 또 정보산업 혹은 정보 네트워크의 기능의 활용이 커다란 요인이지만, 종래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제조업과 유통업의 구분은 불가능한 정도로 생산사업과 유통·판매사업을 연결하는 성격의 서비스화가 엿보인다. 이 경향은 단지 물적인 상품만이 아니라 투자가로서의 소비자개인과 사업자의 사이의 거래에서 현저하며, 앞으로 보다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넷째로 말할 것도 없이 국제적인 거대기업의 결합관계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이미 1970년대에 명확해진 바와 같이 자동차·전기제품분야에서 다국적기

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국제경쟁관계의 대항관계 속에서 자유무역주의가 갖는 전략적으로 현실적인 정책상의 한계에서 보호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서는 예를 들면, 수출국에의 개별적인 형태로 그 모순점을 피해가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새로운 동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8. 競争法 · 競争政策의 課題

8-1. 이상과 같은 일본국내에서 볼 수 있는 산업구조의 경향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거나 앞으로 현저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쟁법상의 문제는 상세한 제도면의 차이점은 있다고 하여도 이론면에서는 거의 공통적이다. 학술회의 보고자인 권오승 서울대학교 교수로부터 한국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훌륭한 문제제기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거기서 소비자의 권리보호, 혹은 법제도의 실효성확보의 시점에 중점을 두고 주요한 논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8-2. 첫째로는 시장의 개방, 진입기회가 확대되고 또 기업간제휴, 결합이 국제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GATT, WTO의 목적·체제는 시장에의 진입장벽의 배제, 진입후의 시장행동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요소의 배제 등, 혹은 국제적인 통일기준에의 「참가」를 의도하는 구조이다.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일 것, 당연한 일로 그와 같이 하여 증가한 시장주체, 혹은 직접·간접으로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건에 관하여 각각 경쟁정책당국은 강력하게 종래 이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규제완화정책의 진전과 함께, 변화한 시장구조에 배려한 경쟁조건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책으로서는 이 관점에서의 이른바 국제적인 경쟁법·정책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과제는 적어도 EU경쟁법과 같은 예를 제외하고는 진전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 정책대응은 2국간의 「포괄적인 협의」라고 하는 제도운용, 혹은 이른바 「역외적용」의 발동 등이었다.

최근(99년 10월), 일미간에서, 「독점금지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자국의 기업행동, 시장에 있어서 경쟁질서에 바람직

스럽지 않은 경쟁저해환경이 존재할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양국정부·당국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 협정의 의의는 종래의 역외적용론에서 늘 지적되는 법제도면의 한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산업정책상의 판단의 차이, 사안의 해명에 필요한 조사 절차 등의 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있다. 이 협정의 내용은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활동에 관해서」의 상호통보, 「자국의 법령, 중요한 이익에 합치하는 한 상대국의 경쟁당국에 대하여 집행활동의 정보제공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던 한쪽의 국가는, 상대국영내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상대국의 경쟁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집행활동을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요청을 받은 당국은 집행활동을 개시, 또는 확대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상대국에게 신속하게 그 결정을 통지한다」(제5조)라고 되어 있다.

「상대국영내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한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의 악영향」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그 조항의 성격(「적극적 예양」)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운용의 면에서는 이것은 커다란 과제이다.

둘째는 독점금지법의 집행력,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이 과제영역에서는 제도설계·효과적인 운용의 강화 등의 면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법의 실효성의 확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과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이것은 최근의 기업활동의 발전을 배경으로 사법 특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론전개의 동향이다. 즉, 시장의 법질서를 유지확보하는 상에서의 민상법 등 경쟁질서의 기능면에도 주목하고, 법제도의 집행기관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 경쟁질서의 확보에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의 동향이다. 독금법을 포함한 「경쟁법」의 파악론, 혹은, 독금법이 확보하려고 하는 경제적 질서를 「공서(公序)」로서의 법제도를 둘러싼 체계적인 인식, 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것은 반경쟁적인 시장행동에 대한 중지청구제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정비 등이다. 개인의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들의 제도설계가 중요한 과제이다.

9. 글로벌화하는 市場에서의 消費者運動 · 市民運動의 必要性和 期待

현대의 시장구조와 행동은 소비자를 종래 이상으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수단의 전자화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듯이, 개인으로서의 자율, 자기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식으로서도 동시에 자율이나 책임의 인식의 개인적인 제도면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농산물·의약품·식품 등, 생산방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고, 그것이 실용화되고, 또 기술개발의 새로운 기업도 서비스사업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시장의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의 소비자개인이, 어떤 경우에는 생활의 장에서 「고독화」하는 경향 속에서 한계 있는 개인의 경제적·문화적 이익, 행복의 추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연대, 협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소비자문제의 시점에서의 논점은 수없이 많지만, 특히 주요한 점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9-1. 소비자계약법에 관하여

소비자계약법은 최근의 개인에 대한 서-비스사업의 발전, 방문판매 등 「무점포판매」의 악질화, 증가경향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특질은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비자측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사업자측에 유리한 조항의 설정을 무효로 하는 점, 혹은 종래의 「방문판매법」과 같이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등을 지정제도에 의해서 특정하지 않고, 널리 사업일반으로 확대하는 제도로 했던 것이다. 역시 이 법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논점은 심포지움의 토의에서 필요하면 언급하기로 한다.

9-2. WTO교섭관련사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기(前記)와 같이 소비자문제로서의 시점에서 본 WTO차기무역교섭의 대상에는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중요한 논점사항으로서 농업문제, 투자, 서-비스무역 등이 있다. 특히 이들과 관련하여 「비무역관심사항」이 다국간의 분쟁사항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 소개한 R.Nader의 주장이나 「문화경제학」의 측에서의 논급 등은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WTO설립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시애틀각료회담에서의 커다란 대립점의 하나는 농업영역에서의 문제, 특히 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 등의 「다면적 기능」에의 배려의 필요성, 혹은 식품의 안전·품질이라고 하는 소비자への 배려 등이었다. 대략 말하면, 아메리카·케인즈(오스트레일리아)와 EU·일본과의 대립관계가 엇보인다. 일본은 식량수출국·수입국, 혹은 선진국·도상국의 어느 쪽에도 공평·공정한 룰-로 임할 것, 또 각국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규율을, 이라고 하는 기본자세이다. 일본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농업정책의 원활한 실시, 자연조건, 역사적인 경위의 차이 등에의 배려를 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식량의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안전보장」도 또한 「다면적 기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면적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의와 위상(예를 들면 수출보조금삭감문제와의 관계에서 그 주장이 교섭 속에서 갖는 전략적인 의의) 등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농산물·농산물관련의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소비자문제로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로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한 대응을 포함하여 일본의 소비자운동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운동의 주체는 일본에서는 전국주부연합회(「주부련」), 혹은 일본생활협동조합회(「일생활협」) 등이 있다. 특히 후자는 일본의 소비생활협동조합의 전국단체이며, 현재 총사업액 3조 4천억엔, 조합원수 2132만명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최대의 NPO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협동조합운동의 기초를 쌓은 가가와 도요히코는 「세계를 쌓아 올리는 기초는 개인의 자립·협동 그리고 연대이다」라고 설파했다. 그 기초 위에 생활운동은 발전하여, 최근 21세기의 이념과 비전을 「자립한 시민의 협동력에 의하여 인간다운 삶의 창조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사업과 조직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필자 자신도 또한 법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NPO의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법의식의 현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운동조직의 사회적·경제적인 위치를 소개하고 강조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의 지배」가 갖는 의의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적인 통치원리의, 법의 세계에서

의 반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국가내부의 국민의 생활 영역에서도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의미에서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서, 그 원리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